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31호(2023.05.02.)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명 칭 :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다. 면 적 : 390,397.8㎡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2016. 06. 29)에 따라 신속한 개발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중산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 2016. 06. 29(지구지정 고시일) ~ 2024. 09. 30

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총 계		390,379.8	100.0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155,619.0	39.8
	공동 주택	소 계	136,019.0	34.8
		공공지원	79,374.0	20.3
		민간임대	29,052.0	7.4
		공공임대	27,593.0	7.1
	단독주택		17,208.0	4.4
	근린생활시설		2,392.0	0.6
판매· 업무 시설 용지	합 계		44,902.0	11.5
	상업시설		6,638.0	1.7
	자족시설		38,264.0	9.8
기반 시설 용지	합 계		188,306.8	48.3
	공원 · 녹지	소 계	104,472.0	26.7
		공 원	43,509.0	11.1 4개소, 저류시설중복면적(4,731m ²) 포함
		녹 지	33,908.0	8.7 11개소
		하 천	27,055.0	6.9 2개소, 도로중복면적(1,810m ²) 제외
	도로	소 계	67,708.8	17.4 24개소
		도 로	67,010.8	17.2 18개소, 하천중복면적(1,810m ²) 포함
		보행자 전용도로	698.0	0.2 6개소
	주 차 장		2,626.0	0.7 2개소
	교육 시설	소 계	13,500.0	3.5
		초등학교	12,506.0	3.2 1개소
		유 치 원	994.0	0.3 1개소
기타 시설 용지	합 계		1,552.0	0.4
	주 유 소		1,552.0	0.4 1개소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가. 수용인구(변경)

- 기정 : 7,433인
- 변경 : 7,658인

나.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 2,972호

(단독주택 63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637호, 공공임대 291호, 행복주택 327호, 공공분양 654호)

구 분	면 적(m ²)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53,227	2,972	7,433	호당 2.5인
단독주택	17,208	63	158	-
점포겸용	17,208	63	158	D1~11
공동주택	136,019	2,909	7,275	-
60m ² 이하	62,339	1,505	3,764	-
A1	7,480	187	468	공공지원 민간임대
A2	13,470	337	843	공공지원 민간임대
A3	27,593	654	1,635	공공분양
	13,796	327	818	행복주택
60~85m ² 이하	73,680	1,404	3,511	-
A1	26,199	499	1,248	공공지원 민간임대
A2	32,225	614	1,535	공공지원 민간임대
A4	15,256	291	728	공공임대

- 변경 : 3,062호

(단독주택 63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637호, 통합공공임대 381호, 행복주택 327호, 공공분양 654호)

구 분	면 적(m ²)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53,227	3,062	7,658	호당 2.5인
단독주택	17,208	63	158	-
점포겸용	17,208	63	158	D1~11
공동주택	136,019	2,999	7,500	-
60m ² 이하	77,595	1,886	4,717	-
A1	7,480	187	468	공공지원 민간임대
A2	13,470	337	843	공공지원 민간임대
A3	27,593	654	1,635	공공분양
	13,796	327	818	행복주택
A4	15,256	381	953	통합공공임대
60~85m ² 이하	58,424	1,113	2,783	-
A1	26,199	499	1,248	공공지원 민간임대
A2	32,225	614	1,535	공공지원 민간임대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24	3,970	67,708.8	8	1,911	33,403	4	551	10,168	12	1,508	23,662
광로	—	—	—	—	—	—	—	—	—	—	—	—
대로	2	634	15,960	—	—	—	1	93	2,976	1	541	12,984
중로	8	2,325	41,791	2	1,049	24,783	3	458	7,192	3	818	9,816
소로	14	1,011	9,482	6	862	8,620	—	—	—	8	149	862
가각 및 버스정차대 등			475.8						—			

나.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2개소	2,626	
주차장	1	초평동 48 일원	1,005	
주차장	2	초평동 31-13 일원	1,621	

다.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4개소	43,509	
근린공원	소계	2개소	37,288	
	1	초평동 55-3 일원	23,384	
	2	초평동 19-1 일원	13,904	저류시설 1개소 (4,731m) 중복면적 포함
어린이공원	소계	1개소	1,532	
	1	초평동 53-1 일원	1,532	
소공원	소계	1개소	4,689	
	1	삼동 481-47 일원	4,689	

라.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11개소	33,908	
완충녹지	소계	1개소	2,451	
	1	초평동 25-25 일원	2,451	
경관녹지	소계	10개소	31,457	
	1	초평동 52-1 일원	336	
	2	초평동 51-1 일원	1,797	
	3	초평동 52-2 일원	394	
	4	초평동 54 일원	3,521	
	5	초평동 55-7 일원	1,332	
	6	초평동 76 일원	3,159	
	7	초평동 63 일원	8,666	
	8	초평동 25-54 일원	10,275	
	9	초평동 16 일원	850	
	10	초평동 25 일원	1,127	

마.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2개소	13,500	
유치원	소계	1개소	994	
	1	초평동 52-2일원	994	
초등학교	소계	1개소	12,506	
	1	초평동 57-3일원	12,506	

바. 하천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2개소	27,055	—
소하천	소계	2개소	27,055	도로 중복면적 (1,810m ²) 제외
	1	초평동 53-3일원	19,387	소하천(신촌천) 도로 중복면적 (1,088m ²) 제외
	2	삼동 552-20일원	7,668	소하천(금천천) 도로중복면적 (722m ²) 제외

사. 우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계	—	1개소	4,731	
저류시설	1	초평동 19-1일원	4,731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계획

○ 녹지 확보

- 생태환경과 공원녹지의 접목하여 공원녹지 계획하고, 다양한 규모와 기능의 생물 서식공간 마련

○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생태순환도시 조성

- 하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확보

·수변으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친수성을 갖춘 단지로 개발

- 우수의 침투 및 저류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나. 탄소저감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단열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 버스이용 원활토록 대중교통 체계 마련 및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의왕초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삼동 일원	390,379.8	—	390,379.8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390,379.8	—	390,379.8	100.0	
주거 지역	소 계	245,661.6	—	245,661.6	62.9	
	일반주거지역	194,510.4	—	194,510.4	49.8	
	제1종일반주거지역	27,293.5	—	27,293.5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167,216.9	—	167,216.9	42.8	
	준주거지역	51,151.2	—	51,151.2	13.1	
	녹지	144,718.2	—	144,718.2	37.1	
지역	자연녹지지역	144,718.2	—	144,718.2	37.1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합계	24	3,970	67,708.8	8	1,911	33,403	4	551	10,168	12	1,508	23,662
광로	—	—	—	—	—	—	—	—	—	—	—	—
대로	2	634	15,960	—	—	—	1	93	2,976	1	541	12,984
중로	8	2,325	41,791	2	1,049	24,783	3	458	7,192	3	818	9,816
소로	14	1,011	9,482	6	862	8,620	—	—	—	8	149	862
가각 및 버스정차대 등			475.8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2	보조간선도로	93	초평동 50-1	대3-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대로	3	1	20~30	보조간선도로	541	대3-2	중2-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367	대3-1	초평동 78-3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1	2	23~26	보조간선도로	682	대3-2	중2-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2	1	15.5	집산도로	272	대3-1	초평동 52-2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160	대3-1	소3-6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2	3	16	집산도로	26	초평동 27-7	중3-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478	대3-1	중2-2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54	중1-1	초평동 93-9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186	중1-1	초평동 산23-3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50	중2-1	중2-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58	중2-1	소1-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3	소1-4	소1-2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66	중2-1	소1-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2	중3-1	소1-6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43	중3-1	소1-5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4	소1-1	소3-3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3	소1-1	소3-5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11	소3-1	초평동 52-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30	소1-1	초평동 5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11	소3-2	초평동 5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8	소2-2	초평동 5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15	중3-1	소1-5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8	5	특수도로	17	소1-5	초평동 16-7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3,509	—	43,509		
기정	1	초평1호 소공원	소공원	삼동 481-47 일원	4,689	—	4,6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	초평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초평동 53-1 일원	1,532	—	1,5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	초평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55-3 일원	23,384	—	23,3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2	초평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19-1 일원	13,904	—	13,9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저류시설 1개소 (4,731㎡) 중복면적 포함	

나)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 표 번	면 시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33,908	－	33,908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초평동 25-25 일원	2,451	－	2,4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1 일원	336	－	3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1-1 일원	1,797	－	1,79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2 일원	394	－	3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4 일원	3,521	－	3,5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5-7 일원	1,332	－	1,3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76 일원	3,159	－	3,1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63 일원	8,666	－	8,6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54 일원	10,275	－	10,2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16 일원	850	－	8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 일원	1,127	－	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2,506	－	12,506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초평동 57-3일원	12,506	－	12,5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변경없음)

■ 하천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표시 번호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2,524 (1,208)	-	70,563 (27,055)	-	
기정	14	신촌천	소하천	초평동 53-3	초평동 3-8	-	1,251 (995)	21~25	27,562 (19,387)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기정	15	금천천	소하천	삼동 552-20	초평동 278-6	-	1,273 (213)	33~60	43,001 (7,668)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는 지구 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나)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731	－	4,731	－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초평동 19－1일원	4,731	－	4,7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9호 (2017.04.10)	근린 공원2 내 중복 결정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구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17,208.0	—	17,208.0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D	D1	795.0	1	265.5	
			2	264.9	
			3	264.6	
	D2	1,326.0	1	265.2	
			2	265.2	
			3	265.2	
			4	265.2	
			5	265.2	
	D3	3,597.0	1	276.7	
			2	276.7	
			3	276.7	
			4	276.7	
			5	276.7	
			6	276.7	
			7	276.6	
			8	276.6	
			9	276.6	
			10	276.6	
			11	276.6	
			12	276.6	
	D4	4,257.0	13	277.2	
			1	266.7	
			2	266.2	
			3	266.4	
			4	264.8	
			5	266.1	
			6	265.9	
			7	265.2	
			8	265.4	
			9	266.2	
			10	266.2	
			11	266.2	
			12	266.5	
			13	266.5	
			14	265.7	
			15	266.5	
			16	266.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D5	1,587.0	1	264.5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264.5	
			3	264.5	
			4	264.5	
			5	264.5	
			6	264.5	
	D6	1,062.0	1	266.3	
			2	264.9	
			3	265.1	
			4	265.7	
	D7	657.0	1	316.8	
			2	340.2	
	D8	788.0	1	255.1	
			2	270.7	
			3	262.2	
	D9	878.0	1	285.5	
			2	301.5	
			3	291.0	
	D10	833.0	1	277.6	
			2	277.6	
			3	277.8	
	D11	1,428.0	1	279.8	
			2	312.6	
			3	277.1	
			4	277.8	
			5	280.7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136,019	—	136,019	
A	A1	33,679	—	33,679	
	A2	45,695	—	45,695	
	A3	41,389	—	41,389	
	A4	15,256	—	15,256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2,392	—	2,392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Cn	Cn1	2,392	—	799	
			—	795	
			—	798	

라)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6,638	—	6,638	
C	C1	4,475	1	1,487	획지는 분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인접한 2개의 획지에 한하여 허용함
			2	1,498	
			3	1,490	
	C2	2,163	1	723	
			2	719	
			3	721	

마) 자족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38,264	—	38,264	
S	S1	38,264	—	38,264	획지 분할가능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13,500	—	13,500	
E	E1	12,506	—	12,506	
	E2	994	—	994	

○ 주유소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1,552	—	1,552	
G	G1	1,552	—	1,552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총계	—	2,626	—	2,626	
P	P1	1,005	—	1,005	
	P2	1,621	—	1,621	

2)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D1~ D1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나목 다중주택, 라목 공관 제외)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과 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및 지하1층에 한함(연면적 산정시 지하층 연면적 포함)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필로티 포함)
		1획지당 가구수 ○ 6가구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및 「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A1~A4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 미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아파트 : 25층 이하 (E/L 포함 81m 이하)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5층 이하
		주택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배치	○ 중저층 배치구간 - 학교 및 근린공원에서의 전망과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및 근린공원 남측의 공동주택 용지에는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도로변과 보행활성화가 필요한 구간에는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통경축 반영구간 - 바람통로와 주요 조망요소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경축 반영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 「건축법」 제61조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3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 ○ 교육환경영향평가의 건축조건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본 지침이 규정하는 일부 내용이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구분			면적 (㎡)	수용 세대수 (호)	수용 인구 (인)	평균 면적 (㎡)	최고 층수 (층)	용적률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합계			136,019	2,909	7,275	—	—	—	—
아파트	A1	소계	33,679	686	1,716	—	—	—	—
		60㎡이하	7,480	187	468	80	25	200	공공지원 민간임대
		60~85㎡	26,199	499	1,248	105	25	200	
	A2	소계	45,695	951	2,378	—	—	—	—
		60㎡이하	13,470	337	843	80	25	200	공공지원 민간임대
		60~85㎡	32,225	614	1,535	105	25	200	
	A3	소계	41,389	981	2,453	—	—	—	—
		60㎡이하	27,593	654	1,635	84	25	200	공공분양
		60㎡이하	13,796	327	818	84	25	200	장기공공임대
	A4	60~85㎡	15,256	291	728	105	25	200	공공임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A1~A4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은 세대당 6제곱미터 미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 30% 이하
			○ 200% 이하 (A1~A3) ○ 140% 이하 (A4)
			○ 아파트 : 25층 이하 (E/L 포함 81m 이하)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 5층 이하
		주택규모 및 세대수	○ <별표1>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배치	○ 중저층 배치구간 - 학교 및 근린공원에서의 전망과 일조를 고려하여 학교 및 근린공원 남측의 공동주택 용지에는 중저층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 - 도로변과 보행활성화가 필요한 구간에는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통경축 반영구간 - 바람통로와 주요 조망요소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경축 반영구간을 지정한다. - 세부사항은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에 배치되는 모든 주거동은 「건축법」 제61조 및 「의왕시 건축조례」 제36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준용하여 일조를 확보한다. ○ 교육환경영향평가의 건축조건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본 지침이 규정하는 일부 내용이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별표1>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

구분			면적 (㎡)	수용 세대수 (호)	수용 인구 (인)	평균 면적 (㎡)	최고 층수 (층)	용적률 (%)	비고
유형	블록명	규모							
합계			136,019	2,999	7,500	—	—	—	—
아파트	A1	소계	33,679	686	1,716	—	—	—	—
		60㎡이하	7,480	187	468	80	25	200	공공지원
		60~85㎡	26,199	499	1,248	105	25	200	민간임대
	A2	소계	45,695	951	2,378	—	—	—	—
		60㎡이하	13,470	337	843	80	25	200	공공지원
		60~85㎡	32,225	614	1,535	105	25	200	민간임대
	A3	소계	41,389	981	2,453	—	—	—	—
		60㎡이하	27,593	654	1,635	84	25	200	공공분양
		60㎡이하	13,796	327	818	84	25	200	장기공공임대
	A4	60㎡이하	15,256	381	953	56	25	140	통합공공임대

다) 근린생활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Cn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 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기술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및 「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라) 상업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C1, C2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너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마목 동식물원 제외)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정신병원·요양병원, 나목 격리병원·마약진료소, 장례식장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 70% 이하
			○ 450% 이하
			○ 7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및 「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마) 자족시설용지(준주거지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S1	용도	① 주용도(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 마권(馬券)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 경기장, 마목 동식물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가목 학교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② 부용도(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가목 도매시장, 나목 소매시장 제외) - 제9호 의료시설(가목 정신병원·요양병원, 나목 격리병원·마약진료소, 장례식장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24호 방송통신시설(나목 전신전화국, 라목 통신용시설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법」 및 「의왕시 건축조례」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거리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바)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교육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E1, E2	용도	허용용도
			E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초등학교) ○ 「유아교육법」 제9조에 의한 병설유치원
			E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의한 어린이집(연면적 30% 미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E1 ○ 250% 이하
			E2 ○ 200% 이하
			높이
			E1 ○ 5층 이하
			E2 ○ 4층 이하
		배치	배치 ○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교사동을 충분히 이격하여 소음 등으로부터 학교환경을 보호한다. ○ 교육시설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교육시설은 생활권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권장한다. ○ 인접한 공동주택 및 공원 등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건축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주유소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G1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의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내용	
-	P1, P2	용도	P1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P2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적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라목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공연장, 나목 종교집회장,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카목 교습소·직업훈련소, 파목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거목 다중생활시설, 너목 제조업소,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가목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나목 체육관, 다목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나목 오피스텔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규모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P1 ○ 250% 이하
				P2 ○ 450% 이하
			높이	P1 ○ 5층 이하
				P2 ○ 7층 이하
		배치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조례」 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기타		○ 기타 및 세부세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3) 기타 및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정	변경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7조 (대지내 공지) ②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1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1장 단독주택용지 제7조 (대지내 공지) ②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제1장 제13조 ①항 2호 가목에 따라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높이차를 15센티미터 이하로 조성하여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 제7조 (대지내 공지) ②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1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3장 근린생활시설용지 제7조 (대지내 공지) ②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제1장 제13조 ①항 2호 가목에 따라 전면 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높이차를 15센티미터 이하로 조성하여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장 상업시설용지 및 자족시설용지 제6조 (대지내 공지) ③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15센티미터 이하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4장 상업시설용지 및 자족시설용지 제6조 (대지내 공지) ③ 전면공지의 포장시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제1장 제13조 ①항 2호 가목에 따라 전면보도와 높이차 없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높이차를 15센티미터 이하로 조성하여 단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변경)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남군포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삼천리 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다. 열공급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라. 집단에너지 수요량 및 타당성 검토(변경)

- 집단에너지 수요량
 - 기정 : 최대열부하(19.3Gcal/h), 열사용량(37,327Gcal/년), 열밀도(49.3Gcal/k㎡.h)
 - 변경 : 최대열부하(19.0Gcal/h), 열사용량(36,458Gcal/년), 열밀도(48.7Gcal/k㎡.h)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5호)에 의거 본 사업지구의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최대열부하 및 열사용량이 도입기준에 부적합

3. 방재계획(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개발로 인한 소하천 신촌천의 유입 홍수량 증가분을 사업지구 내 영구저류지 설치를 통해 저감하고 하천수위를 고려한 단지계획고 설정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 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의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사면안정공법 실시

라. 자연재해 중 사업지구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재해

○ 지진대책

- 단지 내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각 시설별로 내진설계기준 적용
- 지진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 간선도로 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 화재 및 산불대책

- 공원, 녹지, 간선도로 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통한 화재확대 방지하고 소방·구조활동 집결의 거점으로 활용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변경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5호(2017. 11. 30)로 기 고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가. 편입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75호(2017. 11. 30)로 기 고시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100% 철거 후 신축

6.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분 귀속 총괄(변경없음)

구분	전체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의왕시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필지수 (개소)	면적 (㎡)
계	96	31,239	18	12,624	4	982	74	17,633
구거	3	8,719	3	8,719	—	—	—	—
도로	65	16,390	12	2,889	3	200	50	13,301
유지	7	886	—	—	—	—	7	886
하천	21	5,244	3	1,016	1	782	17	3,446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2) 소관청별 토지조서(변경없음)

가) 국토교통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계		필지수 18개		12,624	12,624	12,624	—	
1	의왕시 삼동	525-1	도	1	1	1	국(국토교통부)	
2	의왕시 삼동	525-4	도	35	35	35	국(국토교통부)	
3	의왕시 삼동	552-2	천	97	97	97	국(국토교통부)	
4	의왕시 삼동	552-17	천	19	19	19	국(국토교통부)	
5	의왕시 초평동	588	천	900	900	900	국(국토교통부)	
6	의왕시 초평동	591	도	85	85	85	국(국토교통부)	
7	의왕시 초평동	591-2	도	26	26	26	국(국토교통부)	
8	의왕시 초평동	591-3	도	635	635	635	국(국토교통부)	
9	의왕시 초평동	591-4	도	11	11	11	국(국토교통부)	
10	의왕시 초평동	591-6	도	199	199	199	국(국토교통부)	
11	의왕시 초평동	591-8	도	401	401	401	국(국토교통부)	
12	의왕시 초평동	594-8	도	16	16	16	국(국토교통부)	
13	의왕시 초평동	598	도	100	100	100	국(국토교통부)	
14	의왕시 초평동	598-2	도	83	83	83	국(국토교통부)	
15	의왕시 초평동	599-3	구	5,437	5,437	5,437	국(국토교통부)	
16	의왕시 초평동	599-4	구	136	136	136	국(국토교통부)	
17	의왕시 초평동	599-5	구	3,146	3,146	3,146	국(국토교통부)	
18	의왕시 초평동	609	도	1,297	1,297	1,297	국(국토교통부)	

나) 농림축산식품부(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계		필지수 4개		982	982	982	-	
1	의왕시 삼동	525	도	102	102	102	국(농림축산식품부)	
2	의왕시 삼동	525-2	도	79	79	79	국(농림축산식품부)	
3	의왕시 초평동	588-5	천	782	782	782	국(농림축산식품부)	
4	의왕시 초평동	598-1	도	19	19	19	국(농림축산식품부)	

다) 의왕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계		필지수 74개		17,633	17,633	17,633	-	
1	의왕시 삼동	481-37	천	5	5	5	의왕시	
2	의왕시 삼동	481-43	도	57	57	57	의왕시	
3	의왕시 삼동	481-44	도	285	285	285	의왕시	
4	의왕시 삼동	481-48	도	1,549	1,549	1,549	의왕시	
5	의왕시 삼동	482-10	도	203	203	203	의왕시	
6	의왕시 삼동	482-13	도	153	153	153	의왕시	
7	의왕시 삼동	482-14	도	430	430	430	의왕시	
8	의왕시 삼동	482-16	도	899	899	899	의왕시	
9	의왕시 삼동	483-10	도	30	30	30	의왕시	
10	의왕시 삼동	483-16	도	68	68	68	의왕시	
11	의왕시 삼동	483-17	도	160	160	160	의왕시	
12	의왕시 삼동	483-20	도	138	138	138	의왕시	
13	의왕시 삼동	483-29	도	184	184	184	의왕시	
14	의왕시 삼동	483-30	도	483	483	483	의왕시	
15	의왕시 삼동	483-31	도	30	30	30	의왕시	
16	의왕시 삼동	483-32	도	224	224	224	의왕시	
17	의왕시 삼동	491-8	도	2	2	2	의왕시	
18	의왕시 삼동	491-9	도	454	454	454	의왕시	
19	의왕시 삼동	491-12	도	6	6	6	의왕시	
20	의왕시 삼동	491-16	도	857	857	857	의왕시	
21	의왕시 삼동	491-17	도	175	175	175	의왕시	
22	의왕시 삼동	492-4	도	179	179	179	의왕시	
23	의왕시 삼동	493-1	도	12	12	12	의왕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24	의왕시 삼동	493-2	도	80	80	80	의왕시	
25	의왕시 삼동	493-3	도	470	470	470	의왕시	
26	의왕시 삼동	494-4	도	45	45	45	의왕시	
27	의왕시 삼동	494-7	도	54	54	54	의왕시	
28	의왕시 삼동	494-8	도	441	441	441	의왕시	
29	의왕시 삼동	495-6	도	4	4	4	의왕시	
30	의왕시 삼동	500-9	도	6	6	6	의왕시	
31	의왕시 삼동	525-3	도	1	1	1	의왕시	
32	의왕시 삼동	527-11	도	9	9	9	의왕시	
33	의왕시 삼동	527-12	도	1	1	1	의왕시	
34	의왕시 삼동	527-13	도	81	81	81	의왕시	
35	의왕시 삼동	552-16	천	428	428	428	의왕시	
36	의왕시 초평동	5-3	도	35	35	35	의왕시	
37	의왕시 초평동	5-4	유	60	60	60	의왕시	
38	의왕시 초평동	7-8	도	1,919	1,919	1,919	의왕시	
39	의왕시 초평동	8-5	도	1,268	1,268	1,268	의왕시	
40	의왕시 초평동	8-7	도	1	1	1	의왕시	
41	의왕시 초평동	8-10	천	376	376	376	의왕시	
42	의왕시 초평동	11-3	천	234	234	234	의왕시	
43	의왕시 초평동	12-2	유	162	162	162	의왕시	
44	의왕시 초평동	12-6	천	4	4	4	의왕시	
45	의왕시 초평동	12-7	천	21	21	21	의왕시	
46	의왕시 초평동	12-10	천	178	178	178	의왕시	
47	의왕시 초평동	12-11	유	37	37	37	의왕시	
48	의왕시 초평동	12-12	유	105	105	105	의왕시	
49	의왕시 초평동	12-17	도	38	38	38	의왕시	
50	의왕시 초평동	12-18	도	489	489	489	의왕시	
51	의왕시 초평동	12-20	도	68	68	68	의왕시	
52	의왕시 초평동	12-22	천	23	23	23	의왕시	
53	의왕시 초평동	12-23	천	256	256	256	의왕시	
54	의왕시 초평동	12-24	유	72	72	72	의왕시	
55	의왕시 초평동	13-1	천	36	36	36	의왕시	
56	의왕시 초평동	13-2	유	160	160	160	의왕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무상귀속 면적(㎡)	소유자	비고
57	의왕시 초평동	14	천	566	566	566	의왕시	
58	의왕시 초평동	14-1	천	9	9	9	의왕시	
59	의왕시 초평동	14-2	천	70	70	70	의왕시	
60	의왕시 초평동	16-2	천	297	297	297	의왕시	
61	의왕시 초평동	19-14	도	125	125	125	의왕시	
62	의왕시 초평동	19-15	도	21	21	21	의왕시	
63	의왕시 초평동	19-16	도	218	218	218	의왕시	
64	의왕시 초평동	22	도	824	824	824	의왕시	
65	의왕시 초평동	25-26	천	331	331	331	의왕시	
66	의왕시 초평동	25-27	유	290	290	290	의왕시	
67	의왕시 초평동	25-43	천	342	342	342	의왕시	
68	의왕시 초평동	25-44	천	270	270	270	의왕시	
69	의왕시 초평동	25-45	도	1	1	1	의왕시	
70	의왕시 초평동	71-9	도	42	42	42	의왕시	
71	의왕시 초평동	253-15	도	11	11	11	의왕시	
72	의왕시 초평동	588-4	도	371	371	371	의왕시	
73	의왕시 초평동	598-3	도	60	60	60	의왕시	
74	의왕시 초평동	산28-28	도	40	40	40	의왕시	

3)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시설의 구분	면 적 (㎡)	비 고
소 계	172,180.8	-
도 로	67,708.8	- 24개 노선(보행자도로 6개 노선 포함) - 중복면적(하천:1,810㎡) 포함
공 원	43,509	-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유수지:4,731㎡ 중복면적 포함)
(유수지)	(4,731)	- 1개소(근린공원 2호내 설치)
녹 지	33,908	- 11개소(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10개소)
하 천	27,055	- 소하천 2개소 (신촌천, 금천천) - 중복면적(도로 : 1,810㎡) 제외

4) 대체시설(변경없음)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표(보행자도로 포함)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24	3,970	67,708.8	8	1,911	33,403	4	551	10,168	12	1,508	23,662
광 로	기정	-	-	-	-	-	-	-	-	-	-	-	-
대 로	기정	2	634	15,960	-	-	-	1	93	2,976	1	541	12,984
중 로	기정	8	2,325	41,791	2	1,049	24,783	3	458	7,192	3	818	9,816
소 로	기정	14	1,011	9,482	6	862	8,620	-	-	-	8	149	862
가각 및 버스정 차대 등	기정	-	-	475.8	-	-	-	-	-	-	-	-	-

■ 도로 조서(보행자도로 포함)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2	보조간선도로	93	초평동 50-1	대3-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대로	3	1	20~30	보조간선도로	541	대3-2	중2-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1	1	23	집산도로	367	대3-1	초평동 78-3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1	2	23~26	보조간선도로	682	대3-2	중2-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2	1	15.5	집산도로	272	대3-1	초평동 52-2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160	대3-1	소3-6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2	3	16	집산도로	26	초평동 27-7	중3-1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478	대3-1	중2-2	일반도로	-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54	중1-1	초평동 93-9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중로	3	3	12	집산도로	186	중1-1	초평동 산23-3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50	중2-1	중2-1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58	중2-1	소1-1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03	소1-4	소1-2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66	중2-1	소1-1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2	중3-1	소1-6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43	중3-1	소1-5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4	소1-1	소3-3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3	소1-1	소3-5	일반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11	소3-1	초평동 52-1	보행자 전용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30	소1-1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11	소3-2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8	소2-2	초평동 5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15	중3-1	소1-5	보행자 전용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소로	3	8	5	특수도로	17	소1-5	초평동 16-7	보행자 전용도로	-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나)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3,509	—	43,509		
기정	1	초평1호 소공원	소공원	삼동 481-47 일원	4,689	—	4,689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	초평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초평동 53-1 일원	1,532	—	1,532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	초평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55-3 일원	23,384	—	23,384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2	초평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초평동 19-1 일원	13,904	—	13,904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저류시설 1개소 (4,731m ²) 중복면적 포함

다)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33,908	—	33,908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초평동 25-25 일원	2,451	—	2,451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1 일원	336	—	336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1-1 일원	1,797	—	1,797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2-2 일원	394	—	394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4 일원	3,521	—	3,521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55-7 일원	1,332	—	1,332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76 일원	3,159	—	3,159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63 일원	8,666	—	8,666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54 일원	10,275	—	10,275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16 일원	850	—	850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초평동 25 일원	1,127	—	1,127	국도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라)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2,524 (1,208)	-	70,573 (27,055)	-	
기정	14	신촌천	소하천	초평동 53-3	초평동 3-8	-	1,251 (995)	21~25	27,562 (19,387)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기정	15	금천천	소하천	삼동 552-20	초평동 278-6	-	1,273 (213)	33~60	43,001 (7,668)	의왕시 고시 제2015-9호 (2015.1.23)	

※ () 는 지구 내 편입 연장 및 면적임

마)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 면 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731	-	4,731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초평동 19-1일원	4,731	-	4,731	국토교통부 제2017-209호 (2017.04.10)	근린공원2 내 중복결정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의왕시장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17,208	63	이주자택지 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 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변경) 승인 후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 : 감정평가액 비주거 : 낙찰가격		
	공동 주택	공공 지원 민간 임대	85㎡ 이하	79,374	2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평가액
		공공 임대	60~85㎡	15,256	1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조성원가 60%~100%
		장기 공공 임대 공공 분양	60㎡ 이하	13,796	1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조성원가 60%
				27,593					감정평가액
	근린생활시설		2,392	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반 시설 용지	유치원		994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주차장		2,626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6,638	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자족시설		38,264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기타 시설 용지	주유소		1,552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205,693	84	—	—	—	—	

※ 참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공급 시기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17,208	63	이주자택지 대상자	수계약	기준면적 이하 : 이주자택지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 감정평가액	지구 계획 (변경) 승인 후										
						협의양도인	수계약	감정평가액											
						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 : 감정평가액 비주거 : 낙찰가격											
	공동 주택	공공 지원 민간 임대	85㎡ 이하	79,374	2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평가액											
		통합 공공 임대	60㎡이하							15,256	1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조성원가 60%					
		행복 주택	60㎡												13,796	1	사업시행자	자체사용	조성원가 60%
		공공 분양	이하																
	근린생활시설			2,392	3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생활대책	수계약	감정평가액											
기반 시설 용지	유치원			994	1	국가·지자체	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주차장			2,626	2	국가·지자체	수계약	조성원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6,638	6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대토보상대상자	수계약	감정평가액 × 평균낙찰률											
	자족시설			38,264	4	국가·지자체	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	주유소			1,552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205,693	84	—	—	—	—										

※ 참고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공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